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 준공(2015.11.18)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위치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생산 및 공급 계획(안 제6조)
 ○ 공급대상 및 가격(안 제7조)
 ○ 공급의 제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159,636천원 정도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0. 13. ~ 11. 02)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11월 18일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능 안 제2조, 제4조), 운영 및 관리와 생산 및 공급계획(안 제5조, 제6조), 공급대상 및 가격(안 제7조), 공급의 제한(안 제8조) 등입니다.
 ○ 관내 농가에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경지 토양환경 개선과 축산농가 사료 효율증대 및 악취저감 등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나, 미생물 공급가격의 연차적 인상 등을 통해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 연간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으므로 삭제 (제1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0. 06 ~ 10. 25)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중,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리 및 사용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이므로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